



제429회 국회(정기회)
제1차 여성가족위원회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 청소년부모의 학업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
자치입법권 확대 〉
■ 정부제출(의안번호 제9119호)

2025. 9.

여 성 가 족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이옥순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청소년부모의 학업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자치입법권 확대 ...	2

I 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정부
2. 제 안 일 : 2025. 3. 19.
3. 회 부 일 : 2025. 3. 20.
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청소년부모의 학업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자치입법권 확대

개정안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4제1항제4호).

현행	개정안
제18조의4(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4.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<u>여성가족부령으로</u> 정하는 사항 ② ~ ④ (생략)	제18조의4(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여성가족부령 또는</u>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</u> ----- ----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청소년부모¹⁾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의 청소년인 경우로, 현행법 제18조의4²⁾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

1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6. “청소년부모”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.

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2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8조의4(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

부모³⁾의 학업을 위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제1항에서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등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⁴⁾에서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“학업 기간 중 청소년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아 주는 지원”을 규정하고 있으며, 전국의 224개 가족센터를 통한 온가족보듬사업⁵⁾ 및 아이돌봄지원 사업⁶⁾ 등을 통해 지원

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
 2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
 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
 4.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,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) < 최근 3년간 청소년부모 가구 수 현황 >

구분	2021년	2022년	2023년
가구수	2,969	2,345	1,987

자료: 인구주택총조사(통계청)의 데이터를 가공한 「아동가구통계등록부(통계청)」 활용('23년 인구주택총조사' 24.7월 발표, '23년 아동가구통계등록부' 25.3월 공개)

- 4) 「**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**」 제11조의2(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)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“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학업 기간 중 청소년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아 주는 지원을 말한다.
- 5) 가족유형별 이원화된 가족서비스를 통합(건가센터·다가센터)하여 1인가구, 한부모·다문화·조손, 취약·위기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확대 제공

※ 청소년부모: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학습·정서지원 및 심리상담, 전문상담기관 연계, 법률지원, 출산양육지원 등 제공

하고 있음.

개정안은 법제처가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하여 추진 중인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의 일환으로서,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조례로도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.

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주체라는 점⁷⁾,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에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⁸⁾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.

특히, 현행법 제18조의4제1항은 각 호(제1호부터 제4호까지)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지원 중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(중복 지원 제한) 있는 바, 제4호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을 여성가족부령 외에 해당

6) 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: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함. 0~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(한부모)를 위해 지원 단가의 90%를 정부 지원중(2025년 기준)

7) 「**청소년복지 지원법**」 제18조의4(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8) - 학교밖청소년지원 사업(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검정고시 대비반, 멘토링 프로그램)에 지방재정이 30~50% 투입되고 있음
- 온가족보듬지원 사업에 지방재정이 30~70% 투입중
- 아이돌봄지원 사업에서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 단가의 90%를 정부 지원중(2025년 기준)

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
02)6788-5645
